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2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2월 21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2월 2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2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엄셋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제한사항과 해촉 사유에 행위능력 제한자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공신력 높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 위촉 시 제한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제5항 신설)
 -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
- 위원의 의무적 해촉 사유를 규정함(안 제5조제1항 신설)
 -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

-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
- 본 조례 개정으로 자문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금천구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자문 받았으나,
- 형 집행 도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고 ‘위촉 전후를 불문하고’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소급입법 금지 및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집행기관의 법률자문이 있어 서로 상충되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